

UNESCO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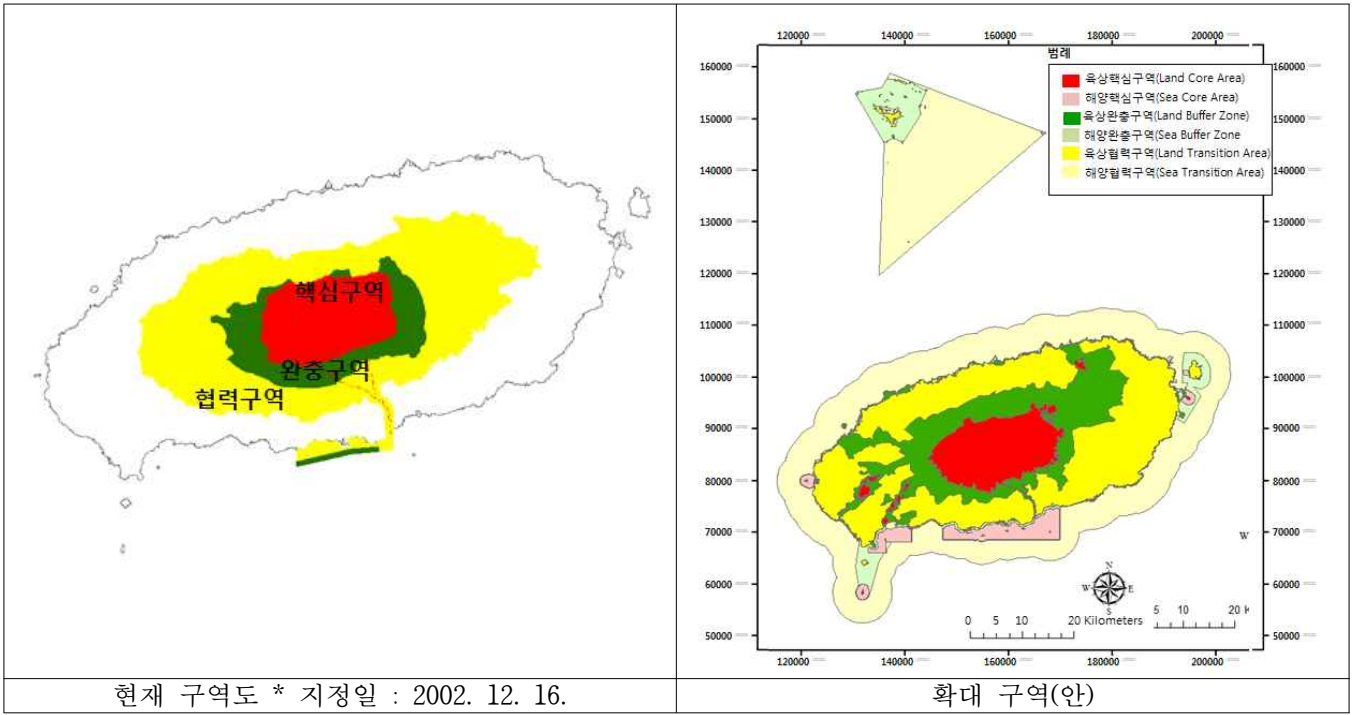
□ 확대 배경 및 목적

-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한 지역이 경관, 생태계, 종 다양성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간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당시 유네스코로부터 해양부분 포함 섬 전체 확대 권고사항으로 확대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해발 200m 이상으로 지정되어 브랜드 활용에 한계가 있어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 연구, 활용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안)

- 현황
 - 지정일 : 2002. 12. 16. (2013. 5. 29. 정기보고서 채택)
 - 지정면적 : 83,094ha (제주도 면적의 45%)
- 최종 확대(안)
 - 지정면적 : 387,194ha (제주도 전역 + 해양경계 5.5km이내)

구분	현재면적(ha)	확대면적(ha)
핵심구역	15,158	39,951
완충구역	14,601	72,286
협력구역	53,335	274,957
합계	83,094	387,194



현재 구역도 * 지정일 : 2002. 12. 16.

확대 구역(안)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구역 설정기준

핵심구역

국내법으로
보호받는 지역

기존 핵심구역

한라산국립공원, 영천·효돈천, 문섬,범섬, 쇠섬

생물다양성 우수
법정 보호 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구(1·2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 면적이 30만 m² 미만인 핵심구역 및 지목상 개발가능 지목은 핵심구역에서 제외

완충구역

생물다양성 보전이
고려되는 지역

생태계 우수 지역

2009년 생태계 서식처질 평가 결과 우수 지역(법정 보호 지역 제외)

국내법으로
보호받는 지역

법정 보호 지역

핵심지역을 둘러싸
거나 인접한 지역

핵심지역을
둘러싼 지역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 면적이 30만 m² 미만인 핵심구역은 완충구역에 포함

협력구역

경제활동지역 및
주거지역

경제활동지역
및 주거지역

• 육지부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 지역
• 해양부 : 본도 경계 및 해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5.5km 이내 지역

※ 핵심구역 중 지목상 개발가능 지목은 협력구역에 포함